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투자유치 지원제도

Investment Incentives Provided by Gyeongnam National Innovation Cluster



경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구현황

문의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경남테크노파크 혁신융복합팀) 055-795-2270~2274

01 경남 지역혁신클러스터

경남 혁신도시와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원기관, 기업, 대학 등을 포함

지정사유

- 경남 서부권은 국내 유일 항공기 완제기 체계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체구조물 관련 항공기업 최대 집적지임
- 경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소재-공정-시험인증 지원이 가능한 연구 및 지역혁신기관과 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음
- 항공국가산업단지, 항공MRO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며, 항공특화산단 등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지구임

위 치

경남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함안군 일원 ※ 경남 지역혁신클러스터 해당 주소는 3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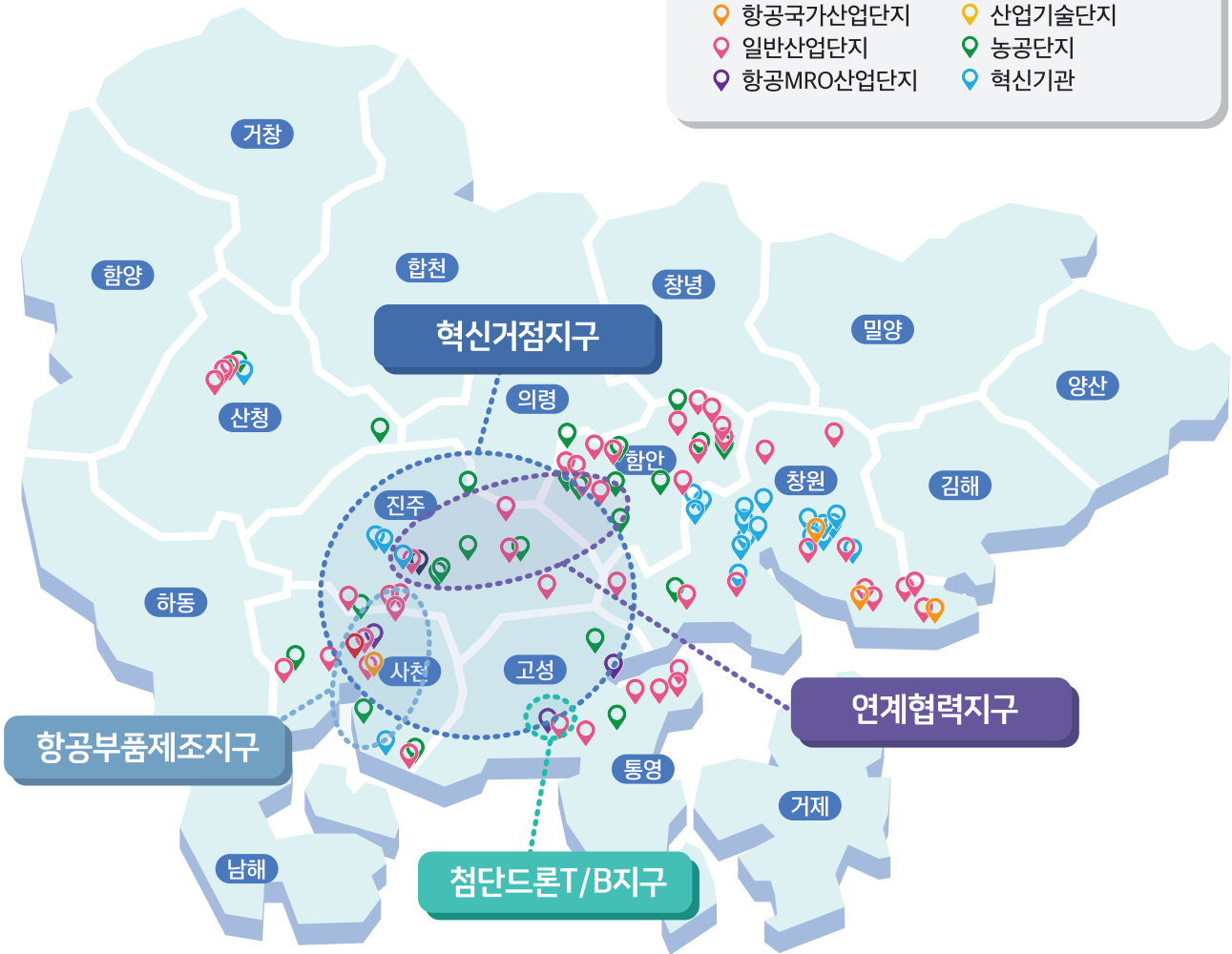
02 경남 지역혁신클러스터 지구지정 현황





03 경남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정지구

- 📍 경남혁신도시
- 📍 항공국가산업단지
- 📍 일반산업단지
- 📍 항공MRO산업단지
- 📍 사천외국인투자지역
- 📍 산업기술단지
- 📍 농공단지
- 📍 혁신기관



혁신거점지구
R&D 지원, 부품 시험·평가 지원 클러스터 혁신거점지구 육성



항공부품제조지구
글로벌 항공기체부품제조 특화지구로 육성



첨단드론T/B지구
유·무인 드론산업 T/B 거점으로 육성하여 타지구와 연계 협력



연계협력지구
혁신클러스터의 연계·확장을 위한 연계협력지구 육성

지정 거점 현황

구 분		단 지 명				면적(km ²)
① 산업기술단지		(재)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0.043
② 산업단지	국가산단(2)	항공국가산단(진주지구, 사천지구)				9.193
	일반산단(12)	뿌리	가산	정촌	사봉	
		상평	종포	용당	사천제1	
		사천제2	축동	함안	이당	
농공단지(2)	사남		축동구호			
③ 연구개발특구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1.140
④ 외국인투자지역		사천외국인투자지역				0.496
⑤ 투자선도지구		무인기종합타운				0.175
⑥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경남 혁신도시				0.437
⑦ 지식산업센터		진주지식산업센터				0.007
⑧ 기타 지구(2)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0.102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칠암캠퍼스)				0.001
계						11.594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km ²)	필지현황	
					지번	
계						
산업기술단지	사천시	(재)경남TP 항공우주센터	완료	0.043	사남면 방지리 676	
산업단지	국가	진주시	경남항공 (진주지구)	조성중	0.469	예하리, 대축리, 화개리 일원 ※ 향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계획(진주지구) 승인 고시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지번을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용지로 편입
		사천시	경남항공 (사천지구)	조성중	0.595	선진리, 통양리, 신촌리 일원 ※ 향후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계획(사천지구) 승인 고시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지번을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용지로 편입
	일반	진주시	뿌리	완료	0.518	(정촌면 예하리) 1401, 1404, 1421, 1406, 1407, 1391, 1386, 1389, 1411, 1414, 1417, 1408
			가산	완료	0.188	(이반성면 가산리) 1384, 1385, 1404,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407, 1406, 1405
			정촌	완료	0.674	(정촌면 예하리) 1238-1, 1238-2, 1238-3, 1238-4, 1238-5, 1238-6, 1238-7, 1239-1, 1240-1, 1240-2, 1240-3, 1240-4, 1240-5, 1240-6, 1241-1, 1241-2, 1241-3, 1241-4, 1241-5, 1241-6, 1241-7, 1243-1, 1243-2, 1244-1, 1244-3, 1244-4, 1245, 1246-1, 1246-2, 1246-3, 1246-4, 1246-5, 1246-6, 1246-7, 1246-8, 1246-11, 1246-12, 1246-13, 1246-14, 1246-15, 1247-1, 1247-2, 1247-3, 1247-4, 1247-5, 1247-6, 1247-7, 1247-8, 1247-9, 1247-10, 1247-11, 1247-12, 1248-1, 1248-3, 1248-4, 1248-5, 1248-6, 1248-7, 1248-8, 1249-1, 1249-2, 1249-3, 1249-4, 1249-5, 1249-6, 1249-7, 1250-1, 1250-2, 1250-3, 1251-1, 1251-2, 1251-3, 1251-4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km ²)	필지현황	
					지번	
산 업 단 지	일 반	진주시	진주(사봉)	완료	0.354	(사봉면 사곡리) 1802-5, 1802-10, 1820-6, 1820-7, 1802-12, 1802-13, 1801-3, 1801-4, 1801-5, 1801-2, 1813-1, 1821-3, 1821-4, 1821-5, 1821-6, 1819-1, 1819-2, 1819-3, 1819-4, 1814-1, 1814-3, 1816-3, 1813-10, 1813-2, 1813-3, 1820-4, 1820-2, 1803-2, 1816-1, 1816-2, 1801-1, 1821-2, 1813-4, 1815-3, 1815-4, 1816-4, 1820-3, 1802-6, 1813-7, 1813-8, 1813-9, 1813-6, 1820-1, 1813-5, 1804-5, 1821-1, 1804-1, 1802-4, 1803-1, 1802-11, 1802-7, 1802-8, 1802-9, 1815-1, 1815-2, 1814-2, 1805-3, 1805-4, 1808, 1806-3, 1805-1, 1805-2, 1806-6, 1806-1, 1806-2, 1804-2, 1804-3, 1804-4, 1806-4, 1806-5, 1840-1, 1840-2, 1844-5, 1844-6, 1844-7, 1844-8, 1844-4, 1850-2, 1840-3, 1844-3, 1845-1, 1845-10, 1845-11, 1845-12, 1845-7, 1845-9, 1844-10, 1844-9, 1845-6, 1840-4, 1844-1, 1844-2, 1845-2, 1845-3, 1845-4, 1845-5, 1848, 1850-3, 1850-4, 1850-6
			진주상평	완료	1.514	(상대동) 033-001, 033-002, 033-003, 033-004, 033-005, 033-006, 033-008, 033-009, 033-010, 033-011, 033-012, 033-013, 033-014, 033-015, 033-016, 033-017, 033-018, 033-019, 033-020, 033-021, 033-022, 033-023, 033-025, 033-026, 033-027, 033-028, 033-029, 033-030, 033-031, 033-033, 033-034, 033-035, 033-036, 033-037, 033-038, 033-040, 033-041, 033-042, 033-043, 033-044, 033-045, 033-046, 033-047, 033-050, 033-051, 033-052, 033-053, 033-054, 033-055, 033-056, 033-057, 033-058, 033-059, 033-060, 033-061, 033-062, 033-063, 033-064, 033-065, 033-066, 033-067, 033-068, 033-069, 033-070, 033-071, 033-072, 033-073, 033-075, 033-076, 033-077, 033-078, 033-085, 033-086, 033-087, 033-089, 033-090, 033-091, 033-092, 033-093, 033-094, 033-095, 033-096, 033-097, 033-098, 033-099, 033-100, 033-102, 033-103, 033-104, 033-105, 033-106, 033-107, 033-108, 033-109, 033-110, 033-114, 033-116, 033-117, 033-118, 033-119, 033-120, 033-121, 033-122, 033-123, 033-125, 033-128, 033-129, 033-130, 033-131, 033-133, 033-134, 033-135, 033-136, 033-137, 033-138, 033-139, 033-140, 033-141, 033-142, 033-143, 033-144, 041-006, 312-001, 312-002, 312-003, 312-004, 312-005, 312-006, 312-007, 312-008, 312-009, 312-010, 312-011, 312-012, 312-013, 312-014, 312-015, 312-016, 312-017, 313-001, 313-002, 313-003, 313-005, 313-006, 313-008, 313-009, 313-010, 313-011, 313-012, 313-013, 313-014, 313-015, 313-016, 313-017, 313-019, 313-021, 313-022, 313-023, 313-024, 313-025, 313-026, 313-027, 313-028, 313-029, 313-033, 313-034, 313-035, 313-037, 313-038, 313-039, 314-001, 314-003, 314-005, 314-006, 314-007, 314-008, 314-009, 314-010, 314-011, 314-012, 314-013, 314-014, 314-015, 314-016, 314-017, 314-018, 314-019, 314-021, 314-022, 314-023, 314-024, 315-001, 315-002, 315-003, 315-004, 315-005, 315-006, 315-007, 315-008, 315-009, 315-010, 315-011, 315-012, 315-013, 315-014, 315-015, 315-016, 315-017, 328-001, 328-002, 328-003, 328-004, 328-005, 328-006, 328-007,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km ²)	필지현황
					지번
산업 단지	진주시	진주상평	완료	1.514	328-008, 328-009, 328-010, 328-011, 328-012, 328-013, 328-014, 328-015, 328-016, 328-017, 328-018, 329-001, 329-002, 329-003, 329-004, 329-005, 329-006, 329-007, 329-008, 329-009, 329-010, 329-011, 329-012, 329-013, 329-014, 329-015, 329-016, 329-017, 334-001 (상평동) 055-000, 055-001, 055-002, 055-003, 055-004, 055-005, 055-006, 055-007, 055-008, 055-009, 055-010, 055-011, 055-012, 055-013, 055-014, 055-015, 055-016, 055-017, 055-018, 055-019, 055-020, 055-021, 055-022, 055-023, 055-024, 055-025, 055-026, 055-027, 055-028, 055-029, 055-030, 055-031, 055-032, 055-033, 055-034, 055-036, 055-037, 055-038, 055-039, 055-040, 055-041, 055-042, 055-047, 055-048, 055-049, 055-050, 055-054, 055-059, 055-060, 055-061, 055-062, 055-064, 055-065, 055-066, 055-067, 055-068, 055-069, 055-070, 055-072, 055-077, 055-078, 055-079, 055-080, 055-081, 055-082, 055-083, 055-085, 153-001, 153-002, 153-004, 153-005, 153-006, 153-007, 153-010, 153-011, 153-012, 153-014, 153-015, 153-016, 153-017, 153-018, 153-019, 153-020, 153-021, 153-022, 153-023, 153-025, 153-026, 153-027, 153-029, 153-030, 153-031, 153-032, 154-001, 154-002, 154-003, 154-005, 154-006, 154-007, 154-009, 154-011, 154-012, 154-013, 154-015, 154-016, 154-017, 154-018, 155-001, 155-002, 155-003, 155-004, 155-005, 155-006, 155-007, 155-010, 155-011, 155-012, 155-014, 155-015, 155-018, 155-019, 155-020, 155-021, 155-022, 155-023, 155-024, 155-025, 155-026, 156-001, 156-003, 157-001, 157-003, 157-004, 157-005, 157-006, 157-007, 157-008, 157-009, 157-010, 157-011, 157-012, 157-014, 157-015, 157-016, 157-017, 157-018, 157-019, 157-021, 157-022, 157-023, 157-024, 158-004, 158-006, 158-007, 158-008, 158-009, 158-010, 158-011, 158-012, 158-013, 158-014, 158-015, 158-016, 158-017, 158-018, 158-019, 158-020, 158-021, 192-001, 194-001, 194-002, 194-005, 194-006, 194-007, 194-008, 194-009, 194-010, 194-011, 194-012, 194-013, 194-014, 194-016, 194-017, 194-018, 195-001, 195-002, 195-003, 195-004, 195-006, 195-007, 195-008, 195-009, 195-010, 195-011, 195-012, 195-014, 195-017, 195-018, 200-001, 200-003, 200-005, 200-006, 200-007, 200-008, 200-009, 200-010, 200-011, 200-012, 200-013, 200-020, 200-021, 200-022, 201-001, 201-002, 201-003, 201-004, 201-005, 201-006, 201-007, 201-008, 201-009, 201-010, 201-011, 201-012, 201-013, 201-014, 201-015, 201-016, 201-017, 201-018, 201-019, 202-001, 202-002, 202-003, 202-004, 202-005, 202-006, 202-007, 202-008, 202-009, 202-010, 202-011, 202-012, 202-013, 202-014, 202-015, 202-016, 202-017, 202-018, 203-001, 203-002, 203-003, 203-004, 203-005, 203-006, 203-007, 203-008, 203-009, 203-010, 203-014, 203-015, 203-016, 203-018, 203-019, 203-020, 212-002, 212-003, 212-004, 212-005, 212-006, 212-007, 212-008, 212-009, 212-010, 212-011, 212-013, 212-014, 212-015, 212-016, 212-017, 212-021,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km ²)	필지현황											
					지번											
산 업 단 지	일 반	진주시	진주상평	완료	1.514	213-001, 213-002, 213-003, 213-004, 213-005, 213-007, 213-012, 213-013, 213-014, 213-015, 213-016, 214-002, 214-003, 214-005, 214-007, 214-008, 214-009, 214-010, 214-011, 214-012, 214-013, 214-014, 214-015, 214-016, 214-017, 214-019, 215-001, 215-002, 215-006, 215-007, 215-008, 215-009, 215-010, 215-012, 215-013, 215-015, 215-017, 215-018, 215-019, 215-020, 222-001, 222-002, 222-003, 222-004, 222-005, 222-006, 222-007, 222-008, 222-009, 222-010, 222-011, 222-012, 222-013, 222-014, 222-015, 222-016, 222-017, 223-002, 223-003, 223-005, 223-007, 223-008, 223-009, 223-010, 223-011, 223-012, 223-014, 223-015, 223-016, 224-001, 224-002, 224-003, 224-004, 224-005, 224-007, 224-008, 224-009, 224-010, 224-011, 224-013, 224-014, 225-001, 225-002, 225-003, 225-004, 225-006, 225-007, 225-009, 225-010, 225-011, 225-012, 225-013, 225-014, 225-015, 225-016, 225-017, 225-018, 225-019, 225-020, 225-021, 225-022, 225-023, 225-024, 225-025, 230-001, 230-002, 230-003, 230-005, 230-007, 230-008, 230-009, 231-001, 231-002, 231-003, 231-004, 231-005, 231-006, 231-008, 231-009, 231-010, 232-001, 232-002, 232-003, 232-004, 232-005, 232-006, 232-007, 232-008, 232-009, 232-010, 232-011, 233-001, 233-006, 233-007, 234-001, 234-002, 234-003, 234-004, 234-005, 234-006, 234-007, 234-008, 234-009, 234-010, 234-011, 234-012, 234-013, 234-014, 234-015, 234-016, 234-018, 234-019, 234-020, 234-021, 235-001, 235-002, 235-003, 235-004, 235-005, 235-006, 235-007, 235-008, 235-010, 235-011, 235-012, 235-013, 235-015, 235-016, 235-020, 235-021, 266-001, 266-007, 266-008, 266-009, 266-010, 266-011, 266-021, 266-022, 266-023, 266-024, 266-025, 266-026, 267-001, 267-002, 267-003, 267-004, 267-008, 267-009, 267-010, 267-011, 281-001, 283-001										
						사천시	사천제1	완료	1.336	(사남면 방지리) 116, 598, 648 (사남면 유천리) 802, 803, 805, 350, 352, 889, 900, 901-2, 901-1, 902, 802, 900						
										사천제2	완료	0.992	(사남면 초전리) 1977, 1979, 1980, 1981, 1982, 1984, 1984-1, 1985, 1986, 1988, 1113, (사남면 방지리) 1978, 733, 733-1, 735, 734, 736, 737, 738, 739, 667-1, 667, 668, 668-1, 668-3, 668-2, 668-4, 669, 668-5, 669-1, 669-2, 669-4, 669-3, 669-5, 670, 671, 671-1, 670-1, 674, 674-1, 675, 675-1, 675-2, 675-3, 675-4, 676, 676-1			
													축동	조성중	0.169	축동면 사다리 135-2일원 ※ 향후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문의 산업시설구역 지번을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용지로 편입
																증포
		용당	조성중	0.259	사천읍 용당리, 유천리 일원 ※ 향후 용당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문의 산업시설구역 지번을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용지로 편입											

구분	시군	지구명	조성 상태	면적 (km ²)	필지현황
					지번
산업 단지	고성군	이당	완료	0.067	(교사리) 891-13
	함안군	함안	완료	1.219	(사도리) 1217, 1218, 1218, 1220, 1221, 1222, 1223, 1226, 1225, 1227, 1224, 1231, 1230, 1229, 1228, 1233, 1234, 1232, 1236, 1235, 1239, 1240, 1238, 1237, 1241, 1239-1, 1239-2, 1245, 1246, 1244, 1243, 1242, 1248, 1248-4, 1247, 1249, 1250, 1251, 1252, 1254, 1253, 1257, 1256, 1255,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8, 1267, 1266, 1265, 1269, 1270, 1271, 1272, 1277, 1278, 1279, 1276, 1275, 1280, 1274, 1281, 1273, 1329, 1328, 1327, 1326, 1325, 1315, 1313, 1316, 1314, 1332, 1331, 1330, 1318, 1319, 1323 (월촌리) 1982, 1981, 1980, 1979, 1991,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2020, 2019, 2018, 2021, 2023, 2024, 2025, 2026, 2022, 2059
	농 공	사천시	사남	완료	0.481
축동구호			완료	0.078	(축동면 구호리) 932, 933, 934-2, 934, 935, 936, 937, 942, 943, 944-1, 944
연구 개발 특구	진주시	기술핵심기관	완료	1.140	(가좌동) 900번지 경상국립대학교
		R&D융합지구	완료	(0.210)	(충무공동)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기술사업화지구	조성중	(0.820)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사천시	사천외국인 투자지역	완료	0.496	(사남면 유천리) 982, 893, 892-1, 892-2, 892-3, 894, 896, 898, 897 (사남면 방지리) 650, 601, 651, 602, 649, 599, 600
투자 선도 지구	고성군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중	0.175	동해면 내곡리 일원 ※ 향후 무인기종합타운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의 산업시설구역 지번을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용지로 편입
혁신도시 예정지구	진주시	경남 혁신도시	완료	0.437	(충무공동 클러스터 용지) 16-1, 225-5, 16-3, 16-4, 15-4, 286, 227-2, 15-2, 15-3, 19-1, 19-2, 20-1, 20-2, 69-1, 69-2, 69-3, 69-4, 69-5, 87-1,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7-10, 87-11, 87-12, 87-13, 87-14, 87-15, 87-16, 87-17, 87-18, 87-19, 87-20, 87-21, 87-22, 87-23, 87-24, 87-25, 87-26, 16-2, 15-1, 225-8, 15-6
지식산업센터	진주시	진주지식산업센터	완료	0.007	(망경동) 57-2
기타 지구	사천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완료	0.102	(이금동) 438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완료	0.001	(칠암동) 150-1번지 내 창업보육센터

01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투자지원 인센티브

(진주, 사천, 고성, 함안 일원)



진주시

문의 | 항공우주사업단 기업유치팀 055-749-8129



0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가 수도권 소재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대기업 300억 원) • 기존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은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투자완료 전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지방 신·증설 투자	기존사업장 유지한 채 비수도권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 인원 10명,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 10% 이상(최소 10명)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의 선정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유의사항

-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 이전에 경상도 및 진주시와 투자협약(MOU)를 체결
- 입지보조금은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설비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간 기존·투자사업장의 고용 유지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영위

지원범위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 가능

구 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국비 최대 100억 원 (지방비 별도)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국내 복귀기업	입지·설비·이전 보조금	투자금액의 34%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 이내, 이전보조금은 4억원 이하)			국비 최대 600억 원 (사업장 1개소당 300억 원)

02 진주시 자체 지원

구분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전략산업 영위, 투자금액 4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6~11%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급)	10억 원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투자금액 12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 30명, 신규고용 10명 이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부지매입비는 정상 분양가의 20% 이내로 최대 5억 원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최대 25억 원 이내	30억 원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신규 고용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5~20%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급)	50억 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	30억 원 이내	-
정보통신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관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 시,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시설장비 설치비 10억 원 초과	고용보조금 3억 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이내, 설비보조금 2억 원 이내	7억 원
관내 투자 도외기업 직원 이주보조금 지원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 설비투자금액 30억 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 당 100만 원 (3년 이상 거주 시)	-

03 지방세 감면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자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60%
	조성 후 직접사용(신·증축)부동산	
	입주기업	신·증축 부동산 대수선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취득세 35% 재산세 37.5%
	분양 임대 목적의 부동산	
	최초 분양 입주자(중소기업 한정)	취득세 50% 재산세 37.5%
창업중소기업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 50%

04 기타 지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을 필한 -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진주시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입주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규모: 업체당 9억원 (재해피해업체는 11억원) 이내 일반운전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우대자금(특화, 수출, 지역전략산업 등) : 4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일반운전자금 2.5%, 우대자금 3.5% (수출업체, 생물산업, 실크산업, 재해피해업체 등) 	매년 상반기/하반기 총 2회

사천시

문의 | 투자유치산단과 투자유치팀 055-831-3055



0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가 수도권이고 기존 고용인원 30명 이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신규사업장에 10억 이상 투자하고 기존사업장은 매각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입지	-	토지 매입가액 10%이내	토지 매입가액 3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보조금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입지 보조금 포함 시, 입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설비	5%	7%	9%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연속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 고용인원 10명 이상 법인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신규투자 10억 이상 (※ 대기업 300억 이상) 신규 고용창출 기존 10% 이상 (※ 최소 10명) 기존 사업장 유지 	설비	5%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U(투자협약) 체결 일로부터 3년 이내 입지보조금만 개별신청 불가 사전 타당성 평가 충족 필요

02 산업단지 조세감면 제도

세 목	감면내용
취득세	75% 감면 (2022. 12. 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50%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5%)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03 기타 지원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내 사업장을 신설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항공우주 관련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보조금 최대 10억 원 (부지매입금액의1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신고후 3개월 이내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등록업체로서 사업장과 본사가 사천시에 소재하고 정상 가동중인 중소 제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규모: 업체당 5억 원 이내 용자기간: 경영안정 3년, 시설현대화 4년 지원내용: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차차액 보전 (경영안정 2.5%, 시설현대화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상반기(1월) 하반기(7월)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업: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기업 당 최대 5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문의: 우주항공과 기업지원팀)

함안군

문의 | 경제기업과 산업단지담당 055-580-2661



01 투자유치 지원제도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입지 보조금 (신증설제외)	<수도권 → 관내 이전 기업> • 본사·연구소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소재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중소기업)	100억 원 (국비기준)
설비 보조금	<신·증설 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최소10명) 신규고용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중소기업)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지원			
입지 보조금	입지계약 체결기업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부지매입비의 50%까지	5억 원
고용 보조금	새로운 공장 설치 시 신규 10명 이상 고용	12개월의 범위 내 초과 상시 고용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3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 훈련 실시	12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2억 원
설비 보조금		20억 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범위 내	2억 원
이전 보조금	도외 소재 공장 시설 이전	5억 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 설비가액의 2% 범위 내	2억 원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용자			
부지 매입비 용자	도외기업 → 관내 이전, 도내기업이 군내 신설, 증설 기업	• 부지매입비 40% 이내 • 5년 거처 3년 균분상환(무이자)	50억 원
군내 신설·증설 기업 지원			
군내 신설·증설 기업지원	<도 내·외/군내 → 군내 신설·증설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 (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30억 원
토지임대료 지원			
토지 임대료 지원	• 도외 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 제조업 •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 체결기업 •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토지임대료의 70/100 범위내 •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3억 원
도외기업 군내 이전·본점이전 보조금 지원			
도외기업 군내 이전	<관외 → 관내 이전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10억 원
본점 군내 이전	<관외 → 관내 본점 이전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본점 근무인원 10명 초과	초과인원 1명당 30만 원	2억 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설비 보조금	<관외 → 관내이전, 신·증설 기업>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5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100억 원
입지 보조금	<관외 → 관내이전, 신·증설 연구소>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정착 지원금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 (3년 이내)	

02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감면율(%)	비고
창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75% 재산세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 이내 취득)
2020년까지 창업 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2020년까지 창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등록면허세 100%	창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60%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산업용 건축물 중 신·증축 부동산 (입주기업)	취득세 50%(추가 25%) 재산세 75%(5년간)	
산업용 건축물 등 대수선 부동산 (입주기업)	취득세 25% (추가 15%)	

03 기타 지원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안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규모: 업체당 10억원 이내 용자기간: 3년(2년 거치1년 분할 또는 일시상환) 지원내용: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 5%,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p>매년 상반기/하반기 총 2회</p>

02

경상남도 투자지원 인센티브

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및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문의 | 경상남도(투자유치단) 055-211-4061



01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 국비 및 도비 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적극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최대 200억 원 등 더욱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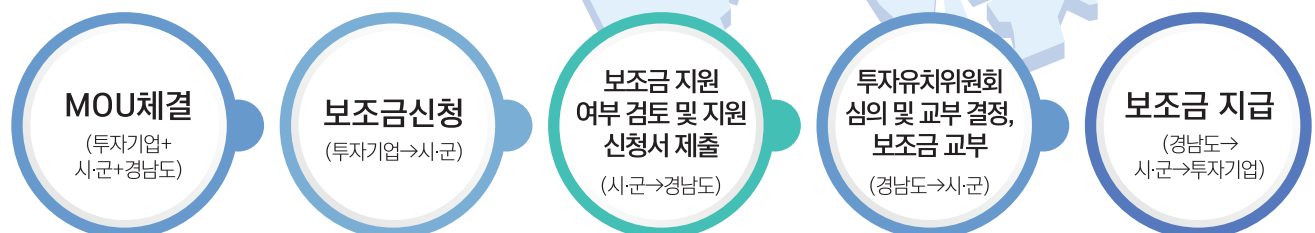
대규모 투자지원[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고용 150명 이상 • 설비 및 부지매입금 최대 200억 원 지원 	도내 신증설 보조금[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100억 원, 신규고용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 최대 30억 원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기업 지원 •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지원
국내복귀투자 보조금[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기업당 최대 600억 원 (사업장당 300억 원) 지원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20억원, 신규고용 10명 이상 • 입지, 고용 등 최대 100억 원 지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고용 20명 이상 • 부지매입비 최대 100억 원 지원

02 보조금 지원절차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I)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01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02 지원절차



- ✓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도 및 시·군 투자협약(MOU)을 체결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 신고일



- ✓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청
-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 불가
- ✓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 기존/투자 사업장의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영위 → 미이행 시 보조금 원금과 이자 환수
- ✓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신청하여야 함

03 지역구분

구 분	시 군
균형발전 상위지역	창원시, 진주시 ,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균형발전 중위지역	통영시, 사천시 , 밀양시, 함안군 , 고성군 , 거창군
균형발전 하위지역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 '18.05.29~ 23.05.28'

투자유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¹⁾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사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기업
-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해당 시·군 또는 경상남도과 이전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수행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경상남도로 이전할 것
-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지원내용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각 지역별(시, 군) 투자유치담당과 문의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진주시)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3%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기존일반지역 (사천시, 고성군, 함안군)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기존 우대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등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1)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미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투자유형

국내 기업이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 연관사업 건물을 위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 신설이란?

지방에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 증설이란?

지방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해당 시·군 또는 경상남도과 신설·증설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수행요건

- (신설) 도내에 사업장 신축, 용도변경, 폐건물 매입하여 사업시설 설치
(증설)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 설치
- 투자 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최소 10명)
중소·중견기업은 30명 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이면 요건 충족
-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원)일 것
-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예외

지원내용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진주시)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3%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균형발전 중위지역 (사천시, 고성군, 함안군)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균형발전 하위지역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II)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01 관련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

• 사전타당성평가

도 또는 시·군과 부지매매 계약 체결 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융자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 새로운 부지에 사업장을 설치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지원내용

부지 매입비 일부 무이자 융자(시군별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 상이)

구 분	시 군	지원요건(투자액/고용)	지원기준
A지역	창원 김해 양산	120억원 이상 60명 이상	부지매입비 30%
B지역	진주 통영 사천 거제 함안	80억원 이상 40명 이상	부지매입비 40%
C지역	밀양 창녕 고성	60억원 이상 30명 이상	부지매입비 50%
D지역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50억원 이상 20명 이상	부지매입비 6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과 중복지원 가능

융자한도

예산의 범위 내 부지 매입대금의 30~60%, 100억 원 까지

융자금상환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신청기한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III) 대규모 투자지원



01 관련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02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사전타당성평가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설비 투자 금액 및 부지매입비 각 10% 이내 최대 200억(각 100억 한도)

구 분	지원요건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 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x 5%	부지 매입비 x 5%	30	투자금액 600억 원 미만 해당
	•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 원 미만 해당
	•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x 7%	부지 매입비 x 7%	56	투자금액 800억 원 미만 해당
	•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 원 미만 해당
	•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x 10%	부지 매입비 x 10%	100	-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 초과 지원 가능

⚙️ 유의사항

투자이행기간(3년) 내 지원기준(투자금액, 고용인원) 미달성 시 전액 환수

**지원대상**

• 사전타당성평가

도 또는 시·군과 부지매매 계약 체결 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연구소를 신설 투자 혹은 도외에서 이전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 100명 이상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정착지원금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1인당 월 1백만원, 3년간

**지원시기**

입지보조금	정착지원금
착공 후 지원금액의 70% 지원, 투자완료 후 30% 지원	연도별 상시고용인원 확인 후 익년도 지원

**지원한도**

예산범위 내 100억 원 까지

**유의사항**

투자이행기간(3년) 내 지원기준(투자금액, 고용인원) 미달성 시 전액 환수

IV) 기타보조금 [도내이전·본점이전 보조금]

01 도외기업 도내이전 투자

지원대상

- 도 또는 해당 시·군과 MOU를 체결한 기업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법인)이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경상남도로 이전

지원요건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내용

설비 투자금액의 5% 이내(최대 10억 원)
※ 투자지역 및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가능

유의사항

투자이행기간(3년) 내 지원기준(투자금액, 고용인원) 미달성 시 전액 환수

02 본점 도내 이전

지원대상

- 도 또는 해당 시·군과 MOU를 체결한 기업
-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할 것

지원내용

본점 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최대 2억 원)

신청기한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IV) 기타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01 관련규정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기업투자촉진지구란?

미분양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산업(농공)단지 조기분양 및 투자유치 활성화 촉진

- 지정조건 : 산업(농공)단지 준공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 이상인 경우 및 투자자유치촉진지역 등

02 기업투자촉진지구 현황 [현재 5개소]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기한
입지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도외 이전, 신·증설)기업 • 20억 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부지매입비 70%이내	투자계획 완료 후 5년 이내
고용보조금		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 1년 이내	투자계획 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1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 1년 이내	교육훈련실시 다음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설비보조금		20억 원 초과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이전보조금		5억 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 10%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도내 이전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지원한도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요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비 고
기업 투자 촉진 지구	•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 원 미만 해당
	•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 원 미만 해당
	•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 원 미만 해당
	•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30	20	10	30	10	-

IV) 기타보조금 [도내 신설·증설투자 보조금]

01 도내 신·증설 투자 지원

- 지원대상**
 - 도 또는 시·군과 MOU를 체결한 기업
 - 도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투자기업
- 지원요건**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지원내용** 설비투자금 10% 이내(최대 30억)
- 유의사항** 신청 : 착공 신고일 3개월 이내, 투자완료기한 3년

02 투자기업 임대료 지원

- 지원대상**
 - 도외 소재기업이 사업장을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 신설·증설하는 기업
 -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임대계약 체결한 기업
- 지원요건**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30명 이상
※ 도외기업이 도내로 이전 시 기존 고용인원 포함
- 지원업종** 제조업
- 지원내용** 토지임대료의 70%, 연간 3억 원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10년
- 유의사항** 신청 : 최초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 완료 기한 3년

03 기금 및 보조금 분담률(도:시·군)

※ 적용기간 2023. 1. 1. ~ 2027. 12. 31.

균형발전 지원대상	분담률		대상지역
	도	시·군	
‘가’ 그룹	80	20	합천, 하동, 함양, 거창, 남해, 고성, 산청
‘나’ 그룹	70	30	밀양, 통영, 의령, 창녕
‘다’ 그룹	60	40	사천, 함안
제외지역(자생적 성장가능 지역)	50	50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V)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01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종 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국세 감면	지방세	
조세 감면(조특법 121조의 2,3 등)		국세 감면	취득세 (도세)	재산세 (시·군세)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 수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법 시행령 [별표7] & 2백만달러 이상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 면제(5년 도입자본재)	15년간 100%	각 시·군 조례에 따름 예) 창원시 10년간 100% + 5년간 50%
개별형 외투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관광업 1천만불 물류업, 의료기관 5백만불 R&D 1백만불 이상 			
자유무역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조특법 63조의 2)		법인세 감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비수도권 이전 - 본사 또는 공장시설 전체 이전 	7년간 100% + 3년간 50%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조특법 6조, 7조, 99조의 9)		법인세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조특법 99조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R&D 등 조특법 6조 18개 업종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제외) -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 × 1,500만원		
창업중소기업 (조특법 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R&D 등 조특법 6조 18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100%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50% ※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 까지 감면 		
일반 중소기업 (조특법 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8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세액 감면 : 5~30% ※ 수도권·비수도권·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종 류	지원요건	지원내용																				
임대료감면(외축법 시행령 19조)		감면율	임대기간/임대료																			
개별형외투자지역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50년 한도 (10년 단위 계약) • 임대료 : 지가의 1% (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 중 상위금액 적용) 																			
부품소재단지	5백만불이상																					
단지형 외투자지역	•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 수반산업 & 1백만불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200명 이상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150~200명				90%																	
	• 제조업 250만불 & 상시고용 70~150명	75%																				
• 제조업 500만불																						
지역특구(기업도시, 연구개발 등) 입주 세액감면		법인세 공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특법 12조의 2)	• 생명공학, 정보통신, 첨단기술 제품업종 등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한도 -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 × 1,500만원																				
기업도시, 지역개발특구 (조특법 121조의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 제조업 20억 원 & 30명 - 물류업 10억 원 & 15명 - R&D 5억 원 & 10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특법 121조의 22)	• 보건의료기술사업 보유 기업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법인세 공제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법인세 일정금액 공제 (조특법 29조의 7)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만원</td> <td>770만원</td> <td>450만원</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td> <td rowspan="2">1,100만원</td> <td rowspan="2">1,200만원</td> <td rowspan="2">800만원</td> <td rowspan="2">400만원</td> </tr> <tr> <td>청년친화기업</td> </tr> </tbody> </table>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정규직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친화기업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정규직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청년친화기업																						
외국인 우수인력세제지원 (조특법 18조, 18조의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R&D센터 연구원 	10년간 50%																				
	• 소부장특화 선도기업 등에서 근무	3년간 70% 2년간 50%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신성장 기술 세액공제 (조특법 10조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 조특법 시행령 157개 기술	법인세감면 20 ~ 3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규칙 별표8의 8)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155개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03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기업이 경상남도로 복귀 투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 제외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해당 시·군 또는 경상남도과 국내 복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지원내용

지역구분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투자보조금(입지 + 설비)	이전보조금
수도권	11%	11%
수도권 밀집지역	21%	21%
일반지역	24%	24%
지역우대지역	34%	3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44%	44%

- 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지원비율
- 투자보조금은 고용인원, 투자규모, 특정업종에 따라 비율 가감 가능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이전보조금 =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 비용(운송비용, 해체 및 재설치 등) × 지원비율

